

# 장애인의 차별·폭력 실태와 정책적 함의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차별 이외에도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의 경우는 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시 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차별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성폭력·성희롱·성차별 발생시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한 지원이 필요시 된다.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 중증, 저연령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구가 증가 추세<sup>1)</sup>를 보이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의 차별<sup>2)</sup>문제는 사회문제로서 부각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은 교육, 취업,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 권리와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차별 이외에도 학교생활, 취

업 및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경우에 모든 사회활동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이외에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차별을 부가적으로 받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경우도 여성장애인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구수는 268만명으로 추정되어 2005년도의 214만명에 비해 증가함.  
2)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 말할 수 있음.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법으로 규제하여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입안되었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었고, 장애인 차별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 관련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접근,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차별 및 폭력 실태<sup>3)</sup>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실태

장애인이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별 영역을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시,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장애인의 입학·전학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유치원(보육시설)의 경우는 30.5%, 초등학교 34.2%, 중학교 29.8%, 고등학교 29.3%, 대학교 16.3%가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상태로 갈수록 차별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교사, 또래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사로부터의 차별이 21.4%, 또래학생으로부터는 49.2%, 학부모로부터는 15.1%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또래학생, 교사, 학부모의 순으로 차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는 26.5%가,

표 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입학-전학시·학교생활)

(단위: %)

구분	입학-전학시					학교생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또래 학생	학부모
받았다	30.5	34.2	29.8	29.3	16.3	21.4	49.2	15.1
안받았다	69.5	65.8	70.2	70.7	83.7	78.6	50.8	8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인 차별·폭력 실태는 '김성희 외(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태분석 대상은 재가장애인 2,611,126명임.

취업시에는 34.0%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는 소득(20.7%), 동료와의 관계(16.9%), 승진시(14.2%)의 순으로 차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경우가 14.3%였고, 보험제도 계약시에는 53.7%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영역의 차별 정도 중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은 영역이었다.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3.7%가,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이용시에는 2.0%가 차별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7.8%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의 20.6%에 비해 차별받은 비율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하겠다.

현재 장애란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39.9%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많다’ 48.3%, ‘매

우 많다’ 32.4%, ‘별로 없다’ 18.5%, ‘전혀 없다’ 0.8%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경우가 80.7%였다. 이는 앞의 장애인 본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더 낮았던 것과 비교할 때, 사회조직에서의 장애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70.8%, ‘들어본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알고 있다’ 7.8%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10.4%로 여성(4.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비율이 7%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장애인의 가정·성폭력 실태

#### 1)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가족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나

표 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정도(결혼시·취업시·직장생활·지역사회생활 등)

구분	결혼시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 취득시	보험제도 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	지역사회 생활
			소득(임금)	동료관계	승진시					
받았다	26.5	34.0	20.7	16.9	14.2	14.3	53.7	3.7	2.0	7.8
안받았다	73.5	66.0	79.3	83.1	85.8	85.7	46.3	96.3	98.0	9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장애차별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장애로 인한 본인의 장애차별 인지정도	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정도
항상 느낀다	8.7	전혀 없다	0.8
가끔 느낀다	31.2	별로 없다	18.5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약간 많다	48.3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매우 많다	32.4
계	100.0	계	100.0

표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알고 있다	10.4	4.3	7.8
들어본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4.1	17.5	21.3
알지 못한다	65.5	78.2	70.8
계	100.0	100.0	100.0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가 92.9%, ‘가끔 있다’ (5.6%)와 ‘자주 있다’ (1.5%) 등의 가족내 차별이 있다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7.1%였다. 이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의 9.7%에 비해 감소한 결과이다.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정도를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성별로는 여성장애인이 7.6%로 남성장애인의 6.8%에 비해 더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 차별·폭력을 받은 정도가 더 많았다. 그리고 장애정도를 중증(1-2급)과 경증(3-6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증장애인(13.4%)이 경증장애인(5.4%)에 비해 차별·폭력을 받은 정

도가 더 많았다. 즉, 장애인 중 여성이, 낮은 연령대에, 그리고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 가족내 차별·폭력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가족내 차별·폭력이 있다고 한 장애인의 경우,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53.6%), ‘정신적 폭력’ (24.4%), ‘방임·유기’ (10.1%), ‘신체적 폭력’ (7.3%)의 순이었다. 그리고 가족내 차별·폭력은 주로 ‘배우자’에 의한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제·자매’ (22.5%), ‘부모’ (17.2%)의 순으로 나타나, 차별·폭력유형은 언어폭력이, 그리고 주로 배우자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표 5.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성별·연령별·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	경증 (3-6급)	
자주 있다	1.1	2.1	4.7	2.7	1.7	0.6	2.9	1.2	1.5
가끔 있다	5.7	5.5	12.8	7.5	5.8	3.9	10.5	4.2	5.6
없다	93.2	92.4	82.5	89.8	92.4	95.6	86.6	94.6	9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0.8%의 장애인이 경험이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경험이 2%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많았고,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인 경우에 더 많았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이 1.4%로 경증장애인(0.7%)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40.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웃' (14.9%), '근친(가족)' (13.9%)의 순이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잡는다' (36.0%),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 (27.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9.1%),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0.1%), '기타' (6.4%), '무시한다' (0.5%)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참거나 무시, 그냥 넘어간다는 소극적 대응이 64.4%였다.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54.4%가 '못했음'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27.7%), '기타' (6.2%),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6.1%), '친척·친구·이웃' (4.9%)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장애인들은 주로 가까이 있는 가족과 상담을

**표 6. 장애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	경증 (3~6급)	
있다	0.0	2.0	5.0	2.6	0.4	0.1	1.4	0.7	0.8
없다	100.0	98.0	95.0	97.4	99.6	99.9	98.6	99.3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장애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구분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대처방법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	기타	계
	0.5	36.0	19.1	10.1	27.9	6.4	100.0

하고 있었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상담한 경우는 6%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상담하지 못한 이유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가 54.4%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97.0%의 장애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4. 정책적 함의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사회적 노력이 필요시 된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형

제도 계약시 차별받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80% 수준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7.8%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았던 영역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이해와 장애 인권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장애인의 이해에 관한 교육용 지침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인 차별 이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을 없애

표 8. 장애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시 주 상담자

(단위: %)

구분	성희롱·성추행·성폭력시 주 상담자									
	가족	친척·친구·이웃	장애인 동료	종교인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행정 공무원	장애인단체·자립생활센터직원	못했음	기타	계
	27.7	4.9	-	0.7	6.1	-	-	54.4	6.2	100.0

고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TV, 인터넷, 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하거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겠다.

가족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7.1%가 경험을 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0.8%의 장애인이 경험이 있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실정이다.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시 그리고 가정 및 성폭력 발생시 주로 상담하는 대상은 '가족'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

원'이라고 한 경우는 매우 적어 아직도 사회복지관련기관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문제 발생시 주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97.0%는 가정·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문제발생시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중 차별과 폭력의 취약계층인 여성, 중증, 저연령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